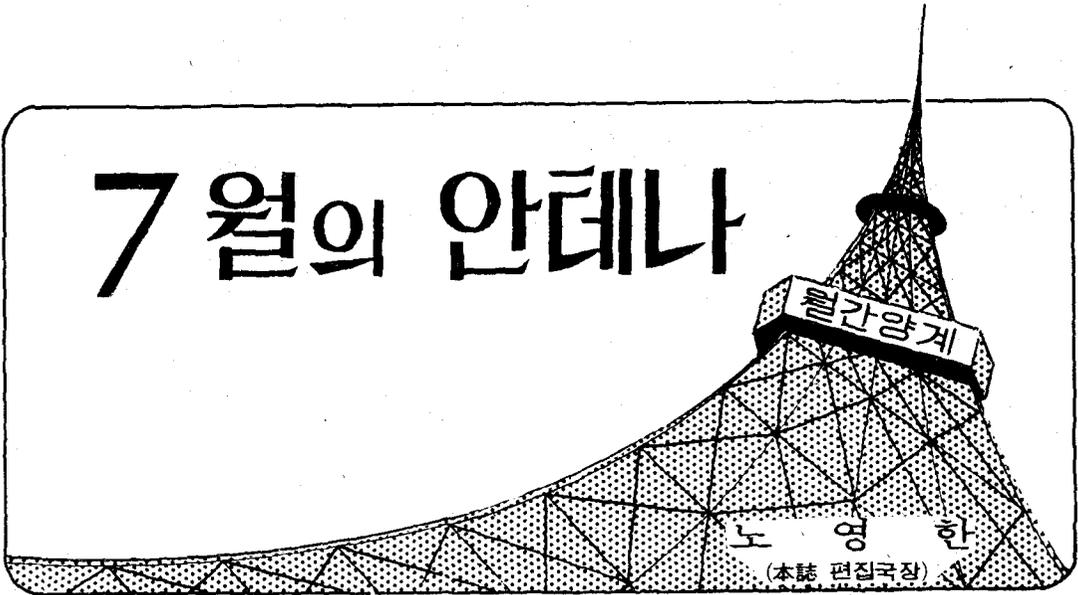


# 7월의 안테나



## 대용품을 막기 위해 생산비 줄여야

버철전 보도에 의하면 농수산부는 계란 분말과 인조꿀의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담당 부처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계란 분말은 작년말 관세가 80%까지 올라가 줌체로 수입이 어렵게 된것으로 알았는데도 여전히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인조꿀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진품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모조품이 외국에서 값싸게 제조되어 이것이 국내에 수입되어 양봉업자들을 울리게 되는 모양이다. 또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우유소비가 격감하였고 원

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 유가공업체는 어쩔 수 없이 저장가능한 분유를 만들어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데 이 재고가 180여 억원에 이르러 유가공업체에 큰 자금압박 원인이 되고 있어 할 수 없이 정부에서 70여억원을 융자하여 이 돈으로 원유대를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우유소비가 격감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요즈음은 아이스크림도 비싼 원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값싼 콩물(대두유)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하니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 값싼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과 유당이 수입되어 대용 분유가 값싸게 시판되고 있어 일반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대용품 모조품의 범람은 비단 낙농업계나 양봉업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 대두단백으로 인조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계란 분말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견하여 최근 식품가공업자간에 대용 계란분말 제조도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계란을 50% 정도 넣고 나머지는 계란과 성분이 비슷하도록 콩 단백질이나 기타 대용품으로 만들어 향료로 진품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직은 계란 분말이 대중화 되지 않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으며 계란보다 더 싼 대용품이 없어 실현단계에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 계란 생산비를 줄여서 대용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축산업자에도 공해방지 시설자금 지원

양계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수한 경

우가 아니면 공해문제가 그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얼마전 대구모 양돈농장에서 흘러 나오는 분뇨가 공해문제로 신문의 지면을 장식한 일이었다.

또 금년에 환경청이 발족함에 따라 수질오염 악취 공해가 축산업을 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환경청은 80년도 공해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운용을 농수산부를 통해 본회에 알려 왔기에 게재하며, 현행 환경보존법상 양계는 별 문제는 없으나 주택지 인근이나 또는 어떤 사정으로 사회문제가 되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공해요인의 발생을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농수산부 공문내용

1. 환경청의 '80년도 공해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운용 요강'을 통보하니 축산 공해방지 시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현행 환경보존법 법령에 축산업이 공해배출업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요령에 의한 자금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나, 금년 하반기에 환경보존법 시행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축산업도 공해배출 업소로 규정되어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1980년도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 금융지원자금운용>

1. 중소기업 특별자금중 중소기업 특별저리자금 (공해방지 시설자금)

가. 자금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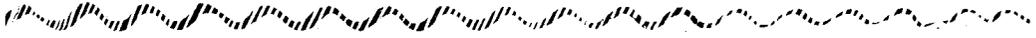
40 억원

나. 융자조건:

1) 융자기간 : 8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2) 금 리 : 3년이내 ~ 연 21%

3 년이상 ~ 연 22%



3) 융자한도 : 2 억원 (1 업소당)

**다. 취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라. 융자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80. 4.1 -12.31

2) 신청장소 : 상기금융기관

3) 신청구비서류

가) 신청서 (각 금융기관 소정양식)

나) 추천서 (환경보전협회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다) 기타관계서류

**2. 산업용 기자재 구입자금 및 산업은행일반시설자금**

**가. 융자조건 :**

1) 융자기관

· 산업용 기자재 구입자금 : 5 년이내

· 산업은행 일반시설자금 : 8 년이내

2) 금 리

· 산업용 기자재구입자금 : 연24.5%  
-26%

· 산업은행 일반시설자금 : 연24.5%  
-25.5%

**나. 취급금융기관 :**

1) 산업용 기자재 구입자금 : 전금융기관  
(한은, 산은제외)

2) 산업은행 일반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다. 융자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80. 4.1 ~12. 31

2) 신청장소 : 상기금융기관

3) 신청구비서류 (중소기업자금과 동일)

**3. 전대차관 자금**

**가. 자금규모 :**

72억원



나. 융자기관 : 10~15 년이내 (차관선에 따라 상이함).

다. 금 리 :

약 10%

**라. 취급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개발금융(주)

**마. 융자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80. 4.1 ~12. 31

2) 신청장소 : 상기금융기관

3) 신청서류 (중소기업 자금과 동일)

**4. 이차보전**

**가. 대상 :**

1980 년도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장의 융자추천을 받은자로서

1) 중소기업 특별자금중 중소기업 특별저

리자금을 용자 받은자

- 2) 산업용 기자재 구입자금 및 산업은행 일반 시설자금을 용자 받은자.

나. 기간 :

용자받은 날로부터 '80. 12. 31까지

다. 보전율 :

년 7%

라.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이자상환(월별 또는 분기별) 후 신청.
- 2) 지급신청 구비서류
  - 가) 신청서(환경청 소정양식) 1 부
  - 나) 이자계산서(금융기관 발행) 2 부
- 3) 신청장소 : 환경청(서울 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 번지)

마. 지급방법

- 1)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 2) 용자 받은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송금함.

5. 용자추천신청

가. 대상자 :

- 1) 중소기업특별자금중 중소기업특별저리 자금은 중소기업자로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2) 산업용 기자재 구입자금 및 산업은행 일반시설자금은 공해방지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자 또는 공해방지사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3) 전대차관 자금은 공해방지사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외국의 공해 방지 시설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자.

나. 기간 :

'80. 3. 15~5. 15.

다. 장소 :

환경보전협회(서울시중구 소공동 111 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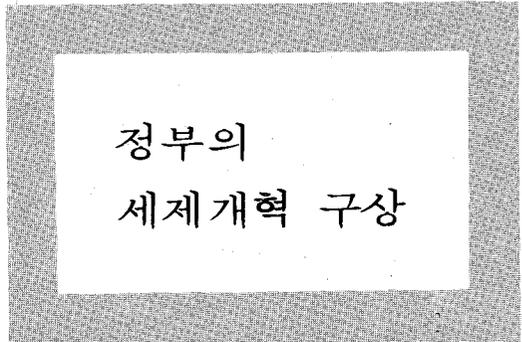
라. 구비서류 :

- 1) 신청서 2 부
- 2) 방지사설 설치계획서(설계도, 전적서, 계약서).
- 3)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 4)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특별저리자금).

6. 주의사항

가. 이차보전은 '80년도 분 이자에 한함.

7. 환경청장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운용요강에 불구하고 별도 조치를 취할수 있다.



지난 17 일 **이승만** 재무부 장관은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81 년도에는 부가세의 실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세계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금년들어 물가가 상승하여 정부의 예산 소요액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일반 경기의 침체로 세수전망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세계개혁구상이 나온데 대하여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부가세율이 실행세율의 하한 폭인 7%까지 인하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징세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과 과세특례자의 범위확대 및 가산세의 완화등과 함께 세율도 인하될 것이 확실해졌다.

또 근로소득세의 현재의 세율구조를 개선하고 또 법인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법인세의 세율구조도 개선되며 특히 지상배당 세율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소득세와 부가세를 완화하는 대신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

데 아무튼 우리 경제 현실에 맞고, 소득 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불로소득에 중과하는 세제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다음 몇가지도 이번 기회에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첫째 부동산 투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거의 임차료와 같은 수준까지 인상하는데도 이해가 되나, 축산업은 넓은면적의 목장용 토지와 축사가 소요되는 반면 그 수익성이 낮고 주기적인 불황으로 그 생산물의 가격진폭이 커서 생산을 기피하므로 수입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재 시한부로 목장용 초지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과거와 같이 목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이루어 지길 바라다.

둘째 소득세에 대해서는 81년도 사업분으로 모든 감면혜택이 끝나는데 축산업은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사업이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며 국민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산성이 낮은 특수한 사업임에 비추어 규모와 형태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셋째 배합사료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부가 가치세는 의제면제로 상당한 감면을 받고는 있으나, 현재 국내물가 상승요인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더욱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논하면서도 생산원자재인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 이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제 개혁시에는 감면대상품목에 넣어야 될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계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안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여 이번 개정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 배합사료가격 자유화

양축가와 사료공장들의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요청하여 오던 배합사료의 가격자유화가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간 정부의(주로 경제기획원) 물가정책에 의해 배합사료 가격이 묶여 왔으나 금년 1월부터 자유화 되기 시작하여 이제 7월 1일부터는 그 빛을 보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획일주의라고들 말한다.

그간 배합사료 공업은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간에 배합율까지도 거의 차이가 없는 획일적인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일반 양축가의 사료선택권이 제약당해 왔었고 이로인한 자원 낭비도 컸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번에 해결되게 되었다.

더욱이 전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10개 품목에 대한 배합사료 성분량 한도를 삭제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등록케 함으로써 사료공장의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번 조치가 운영에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성분량 한도 철폐에 따른 여러가지 의문되는 점은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추후 세부지침이 발표되리라 믿으며 이번 자유화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보완해 나가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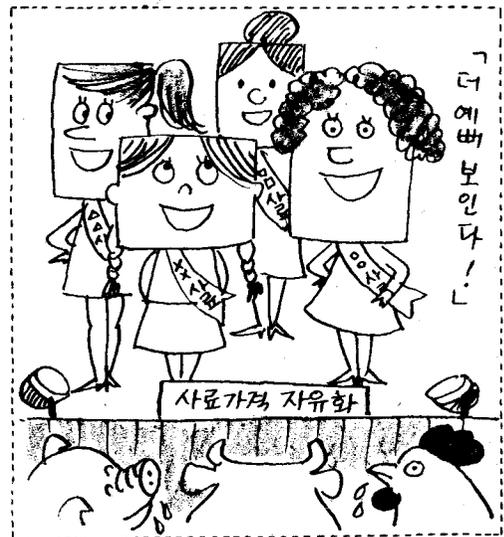
아울러 다음 몇가지를 업계에서 협조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번 자유화가 품질과 가격경쟁이 되어야 하며 어느 공장이 양축가에 이익을 주는가도 경쟁이 되어야 하며, 자금위주의 경쟁이 되지 말기를 바라며...

둘째 제도를 바꿈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일어난다하더라도 계속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야 하며 일이 생길때마다 제도를 고치는 것은 더욱 혼란만 가중하게 될 수 있다.

셋째로 현재 배합사료 공장의 시설 규모가 수요량을 훨씬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선의의 경쟁에 의해 적자생존의 원칙이 이 업계에도 이루어 지리라 예상되며, 중소기업체중 아직도 자유경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곳은 같은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어야지 잘하는 공장에 규제를 가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오히려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우리가 흔히 共生共死란 말을 하나 현실이 이미 생산능력 과잉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 〈농수산부 배합사료가격

### 자율화 공문내용〉

1. 사료 1164—98호(80. 1. 21) 및 사료 1164—143호(80. 1. 26)와 관련됨.

2. 배합사료가격에 대하여는 그간 사료관리법 제 6조 규정에 의거 공장도 최고판매가격을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3. 국제곡류시세의 변동과 환율연동제 및 금리의 유동화 실시로 가격변동요인이 빈번히 발생하여 가격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할뿐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적인 사료수급 조절이 곤란하며, 가격지정에 따른 품질제한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사료품질의 개선 및 새로운 양질사료의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4. 80. 7. 1일부터 배합사료의 공장도 가격지정을 해제하여 배합사료가격을 자율화함으로써 사료업체로 하여금 선의 경쟁을 통한 사료품질개선을 촉진시켜 양축가에게 양질의 사료가 자율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동시에 시장기능에 적응하여 수급조절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5. 배합사료의 주요원료인 도입옥수수, 강피류, 대두박, 어분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배합사료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옥수수의 안정기준 가격제도는 현행대로 지속하고, 강피류(소맥피, 맥강등)가격을 정부고시 가격으로 계속 공급토록 하며 대두박 공급가격은 이를 자율화되 수출입의 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6. 각시도지사 및 사료조절단체는 가격자율화에 따라 사료가격이 일시적으로 등귀하거나 사료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및 자발적인 품질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사료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1. 배합사료가격결정현황

가. 사료수급 및 가격조절에 대한 특별 조치(사료관리법 제 6 조)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료의 매도방법을 정하거나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1) 수입사료 : 옥수수 : 160 \$ /M/T (100.47원/kg)  
                  대 두 : 309.50 \$ /M/T (159.65원)
- 2) 배합사료 : 130.48원/kg(전품목에 평균치)
- 3) 수입양곡의 부산물 : 42.22원/kg(소맥피)
- 4) 정부관리양곡의 부산물 : 38.33원/kg(맥강)

나. 사료가격 지정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 조)

## 2. 배합사료 최고가격 지정제도의 문제점

가. 국제 옥수수 대두가격의 변동 및 제반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빈번한 가격조정 곤란  
나. 환율연동제 실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입원료공급가격의 수시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고정이 곤란

다. 가격제한 및 성분량한도 설정으로 인해 자율경쟁에 의한 품질개선 저해

라. 최고가격 지정시의 원료배합비와 실제 배합사료공장의 원료배합비율이 상이하므로 수급조절이 곤란함.

마. 축산물생산 과잉시에는 저효율사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으나 성분량 한도 설정 및 가격 지정제도상 생산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3. 대 책

#### 가. 목 표

배합사료가격의 자율화로 사료업체의 선의의 경쟁유도 및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양축가의 이익도모

#### 나. 추진지침

- 1) 배합사료가격 자율화
  - 현행 30개품목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해제(현행 주문배합사료, 펠릿사료, 半製品 배합사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자유가격제를 전품목에 80. 7. 1 부터 확대실시)
  - 사료성분량 한도고시 대상의 단계적 감축
  - 벧질, 왕겨등 국산사료자원의 이용증대를 위한 관계규정(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현행규정상 이물질중 용량제로서의 섬유질 사료혼입의 조건부 허용)
- 2) 주원료인 도입 옥수수외 안정기준 가격제도의 지속
  - 사료가격 안정기금의 운영방법.
 

안정기준 가격 이하 가격으로 구매시에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준가격 이상으로 구매시에는 차액을 補填함
  - 배합사료가격 자율화에 따라 안정기준가격을 보다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
- 3) 정부관리양곡 및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맥강, 소맥피) 정부고시가격유지
- 4) 대두박, 어분등 부원료의 공급가격 자율화
  - 배합사료가격 자율화와 동시에 대두박, 어분등 부원료의 공급가격도 자율화하되 수급물량을 감안한 수출입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 다. 수급 및 가격전망

○ 주요원료의 국제가격이 안정세이며 사료생

산이 아직 부진하고 최대생산능력으로 보아 상당한 여유가 있으므로 자율화 이후에도 가격의 등귀나 수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라. 보완대책

##### 1) 부당한 가격거래방지

- 배합사료제조업체 → 주종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을 조사하여 세무관서 통보로 부당한 폭리방지
- 대리점 및 소매상 → 판매가격을 수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로 과다한 마진부가 판매행위 억제

##### 2) 품질관리강화

- 사료공장에 대한 일제점검실시(시설, 품질, 및 원료와 제품의 유통실태조사)
- 시·도간 검사공무원교환점검실시등 검사기능 강화
- 사료검사업무취급요령보완 개정 등 검사제도 개선

##### 3) 과다경쟁예방

- 업체별 원료배정비율의 한도설정 등 조정방안 검토
- 사료협회 등 조절단체의 자율적 조정·전제기능 강화

(참고자료)

#### 배합사료가격결정방법의 추이

기 간 별	가 격 결 정 방 법
'72. 8. 3 이전	시·도지사가 사정
'72. 8. 3 ~ '74. 10. 3	주종품목 1종(산란초기)에 대한 EPB 가격조정 협의, 기타품목은 시·도지사가 사정
'74. 10. 4 ~ '75. 12. 31	자율규제

'76. 1. 1 ~ '77. 8. 11	주중품목 3종 (산란초기, 씨패지, 착유 1호)에 대하여 EPB와 협의조정, 기타품목은 자율규제
'77. 8. 12 ~ '78. 5. 31	주중품목 10종 (산란초기 씨패지, 착유 2, 큰병아리 전기, 산란중기, 육계 후기 I, 종계, 중패지전기, 중패지후기, 고깃소중기)에 대하여 EPB와 협의조정
'78. 6. 1 ~ 현재	전품목 (30종)에 대하여 EPB와 협의조정

**(사료성분량 한도중 개정고시)**

농수산부 고시 제 3106호 (79. 12. 11) 로 고시한 사료성분량 한도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 배합사료의 성분량 한도중 양계용의 “중병아리” “산란중기” “산란말기” “종계”와 양돈용의 “비육돈전기” “임신돈” “종돈”축

우용의 “착유 1” “고깃소전기”, 특수용의 “소 농축사료”의 성분량만을 삭제한다.

2. 반제품 배합사료인 1. 젖소용 대용유 다음에 “2 양돈용 대용유”를 신설하며, 성분량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하고, “2, 옥수수 전분박 발효사료”를 “3, 옥수수 전분박 발효사료”로 “3, 고구마 전분박 발효사료”를 “4, 고구마 전분박 발효사료”로 한다.
3. 부대조건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고시에 계기되지 아니한 축산법 제 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조에 규정된 각종 가축용 배합사료의 성분량 한도와 성분 한도량의 삭제된 품목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등록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공립 기관에서 특수목적용으로 요구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사료제조업자와 요구기관과 상호 협의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임의 등록 할 수 있다.

사료의 종류	성분량의 최소량 (%)					성분량의 최대량 (%)			기 타
	조 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비타민 A	수분	조섬유	조화분	
2. 양돈용대용유	25.0	5.0	0.8	0.6	25,000	-	5.0	8.0	1. 유제품은 50% 이내 배합 할 것 2. 비타민제는 비타민 AD <sup>3</sup> 및 B 군등 복합제와 항생제를 필히 첨가 하여야 하며 항생제의 명칭과 함량을 사료 성분 보증표에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3. 성분등록전에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의 사양시험을 득하되 그 성적이 다음보다 우수하여야 한다. • 40일령에 이유했던 자돈으로 8주령시 까지 사육하여 평균체중이 18kg 이상이어야 한다. • 8주령시 육성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